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기획조정팀
	2009년 12월 11일(금요일)	연락	황경수 제주대 교수 011-697-5912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및 시민참여 합의도출 방안 조례 제정 필요

- 제주발전연구원 외부공모과제 **"환경영향평가 심의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언

○ 환경영향평가시 현재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 본안을 초기 작성하는 절차에서 사업자가 도에 예산을 공탁 의뢰하여 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간 비리를 없애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각종 데이터를 구축하여 용역업체 등에게 나누어 주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사업자와 용역업체에게 부담을 최소화 시켜줄 필요가 있음.

□ 지역 전문가 부족해소방안 : pool제

○ 지역에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pool제가 활용되어야 함. 지역의 전문가는 물론 국내외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안별로 추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사전에 심의위원 신분이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1차적인 포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 소수의 반대위원의 독점권 해소방안 : 부문별 소위원회제도

○ 전문가의 부족으로 어느 한 심의위원이 반대를 할 경우, 그 반대의견을 주장한 위원이 전체 결정의 결정권을 갖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ool제에 소속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의 소위원회를 열고 토론하고 합의를 얻은 후,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업자나 영향평가 용역업체가 심의위원을 직접 만나는 일은 없도록 할 것.

□ 심의위원 선정에 공모방식과 도의회 추천방식 추가

○ 심의위원 선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추천방식이 공유할 필요가 있음. 우선 도지사추천이 일정부분 필요함. 당연직과 전문가 일정부분임. 그리고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수의 배정이 필요함. 추가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서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업체와 심의위원들간의 접촉과 고리단절 : 도의 공무원의 역할 강화

○ 심의위원이 사업자와 만나거나 용역업체와 만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심의위원간에 평가관련 통화를 금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평가할 내용이나 평가대상 사업자등과 관련한 통화를 평가위원들간에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임. 통화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에 보고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는 타협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부탁이나 타협을 제안할 경우 드러나게 되면 심의위원에서 배제하거나 불명예 퇴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스크린제도 : 제3기관에서 사전에 검토

○ 영향평가 보고서를 심의전에 제3기관에 먼저 사전검토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스크린제도와 연결 제주발전연구원 혹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영향평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사전검토를 받도록 함.

○ 심의시에 양적인 내용의 경우 심의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시현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프로그램이 장착된 노트북을 빔프로젝트와 연결하여 프로그램에 입력한 데이터와 구동결과를 직접 시현하여 보여줌으로써 분석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

□ **시민참여와 위원들의 참여적 합의도출 등 조례제정 필요**

○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에서는 공공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줌으로써 갈등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기여하는 기법들을 활용함.

- '여론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기법들과 '정책에 대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기법들이 있음. 포커스 그룹(Focus Group),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규제협상(Regulatory Negotiation),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 시민자문위원회(Citizen's Advisory Committee), 시민배심원제도(Citizens Juries),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등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생태적, 사회적, 과학적 영향이 복잡하고 불확실하여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참여적 합의도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함.

□ **심사 후 심사과정을 감사위원회에 보고 : 상시보고+보관**

○ 영향평가가 끝나면 녹음한 내용과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자료를 항상 보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심의과정에 대한 자료의 보관이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의 문제를 방지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임.

○ 일정기간 경과라는 기간은 추후 결정하면 될 것임. 이는 자료를 실명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정보가 공개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럼으로써 심의위원들은 자기의 발언이나 자기의 주장에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임.

□ **사후관리방안**

○ 제주 인력의 부재로 인해 사후관리 감시단과 심의의원들간 이미 친한 관계여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사후관리 인증제 도입과 운영을 통해 불량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사후관리결과 위반사업장의 위반내용과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불이익을 줄 수 제도를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블랙리스트작성과 비슷한 맥락임.